

2017년 제6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[총괄]

□ 제1호 안건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심의일자 | 2017. 8. 1.(화) | 심의내용 | 건축심의, 교통심의 |
| 안 건 명 | 남구 주안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| | |
| 신청위치 | 남구 주안2,4동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| | |
| 심의결과 | 건축 및 교통분야: 재검토 의결 | | |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검토·반영하시어 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재검토 의결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각 동의 후면부(내측)에 소방차량의 진입 및 부서공간 확보가 가능한 건축계획 재검토
- 불합리한 공동주택의 주차장(지하6~8층) 위치 재검토
- 병원 로비 출입구 등 독립된 전용공간 확보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심의 신청 시 검토·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-이하여백-

□ 제2호 안건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심의일자 | 2017. 8. 1.(화) | 심의내용 | 건축심의, 교통심의 |
| 안 건 명 | 남구 용현동 451-63 업무시설(오피스텔) 신축 | | |
| 신청위치 | 남구 용현동 451-63번지 | | |
| 심의결과 | 건축 및 교통분야: 조건부 의결 | | |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의결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연결 브릿지 부분에 대한 경관성(디자인) 보완
- 보훈병원측 고가차량 (수평)부서공간 확보토록 협의 이행

《교통분야》

- 주차장 진입램프 입구의 고원식횡단보도 위치 조정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-이하여백-

□ 제3호 안건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심의일자 | 2017. 8. 1.(화) | 심의내용 | 건축심의 |
| 안 건 명 | 부평구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| | |
| 신청위치 | 부평구 청천동 104번지 일원 | | |
| 심의결과 | 건축: 조건부 의결 | | |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의결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110동의 층수 조정방안 검토(권장)
- 110동 옥상을 정원 등 주민공간 활용방안 검토(권장)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-이하여백-

□ 제4호 안건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심의일자 | 2017. 8. 1.(화) | 심의내용 | 건축심의 |
| 안 건 명 | 남구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| | |
| 신청위치 | 남구 주안동 1545-2번지 일원 | | |
| 심의결과 | 건축: 조건부 의결 | | |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의결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74㎡형 PD 재배치 조정
- 101동 주출입구 조정(동선 단축)
- 110동 전면 지하주차장 입구 횡단보도 위치 조정(권장)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-이하여백-